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A/CONF.157.23
12 July 1993
Original: ENGLISH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1993년 6월 14-25일**

비엔나 선언 및 행동강령

사무국의 주

첨부된 글은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회의에 의해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입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강령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가 국제 공동체의 우선적인 문제임을, 또한 세계인권회의가 인권이 더욱 충실하게 준수되는 것을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법으로 국제인권체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수단의 광범위한 분석을 수행할 고유한 기회를 가짐을 인정한다.

모든 인권은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며 인간에 내재한 가치임을, 또한 인간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인 주제이며 따라서 제일의 수혜자이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인지하고 단언한다.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서약을 재차 단언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포괄하는 국제연합헌장 제55조에 제기된 목적의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국제적 협동을 개발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공동적이거나 개별적인 행동을 취할 국제연합헌장의 제56조에 포함된 서약을 재차 단언한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가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개발하고 고양시킬 책임을 강조한다.

특히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그리고 크고 작은 국가들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믿음을 재차 단언하는 국제연합헌장 전문(全文)의 결의를 상기한다.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국제법의 조약들과 근본들로부터 비롯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유지되는 환경을 수립하고, 사회적 진보와 더 큰 자유 속의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촉진하고, 관용과 우정을 실천하며, 모든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진보의 촉진을 위한 국제적 기구를 도입할 것을 결의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전문(前文)을 또한 상기한다.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성취 기준을 제정하는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신장을 이끌어 온 근원이며 국제연합이 현존하는 국제 인권 협정들—특히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지니고 있는 기준을 설립하는 데 기초가 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이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또한 동등한 권리의 원칙과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평화, 민주주의, 정의, 평등, 법치, 다원주의, 발전, 삶과 연대의 더 나은 수준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국제연합헌장에 함축된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국제 질서에 대해 가지는 열망과 국제 무대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변화들을 고려한다.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깊이 우려한다.

인권 영역에서의 국제연합 기구를 강화시키기 위해, 또한 국제 인권 기준의 준수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의 목적을 넓히기 위해 이 영역에서의 국제연합의 활동이 정당화되고 강화되어야 함을 인지한다.

튀니스, 산 호세와 방콕의 세 지역 회의에 의해 채택된 선언들과 정부들의 기여를 참작하며, 세계인권회의를 준비하는 과정 동안 독립적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들은 물론, 정부 간 조직과 비정부 조직들의 제안들 또한 유념한다.

국제 공동체가 원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확인하고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의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언질에 대한 재단언으로서, 1993년 국제 세계

원주민의 해를 환영한다.

국제 공동체는 현재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이룩하며 따라서 전세계에 걸친 인권 유린의 지속을 방지할 수단과 방법을 고안해야 함을 또한 인지한다.

세계인과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완전하고 보편적인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할 국제적 임무에 재차 헌신할 것을 요청하는 우리 세대의 정신과 우리 시대의 현실을 간청한다.

국제적인 협동과 연대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한 인권의 실질적인 진보를 성취할 목적으로 국제 공동체의 참여로 새로운 단계를 앞으로 밟아갈 것임을 결의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을 엄숙하게 채택한다.

I

1.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국가가 국제연합헌장, 인권 관련 협정들,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와 보호를 촉진시킬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재차 단언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인 본질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틀에서, 인권 영역의 국제적인 협력의 강화는 국제연합의 목적의 완전한 성취에 필수적이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간의 태생적 권리이며,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정부의 첫번째 의무이다.

2. 모든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의거하여 모든 인간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사회경제문화적 개발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식민지배나 다른 나라의 점령 하에 있는 민족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해 이들이 양도할 수 없는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떠한 정당한 행위라도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자기결정권의 부정을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이 권리의 효과적인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연합헌장에 부응하는 국가 간 우호적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선언에 따라 이것은, 민족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의 원칙에 부응하여 스스로를 통치하여 종류를 막론하고 영토에 속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를 가진 자주적인 국가의 영토 통합이나 정치적 단결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분할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 인권 기준의 구현을 보장하고 감시하는 효과적인 국제적 기준이 외국의 점령 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택해져야 하며, 인권 규범과 국제법, 특히 1949년 8월 14일에 이루어진 전시(戰時) 시민 보호와 관련된 제네바 협정과 다른 적절한 인도주의적 규범에 의거하여 그들의 인권 침해에 항거하는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4.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증진과 보호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특히 국제적 협력의 목적에 따라 국제연합의 최우선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과 원칙의 틀에서,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는 국제 공동체의 마땅한 관심사이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한 조직과 특수 기구들은 국제적인 인권 협정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적용에 기초한 활동의 조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5.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분할할 수 없으며 독립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국제 공동체는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같은 기반에서, 같은 정도의 중요성으로 인권을 다루어야 한다. 국가와 종교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하나, 정치경제문화적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6. 모든 이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위한 국제연합 체제의 노력은 국제연합헌장에 부응하여, 국가 간의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수적인 안정과 복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개발 뿐만이 아닌 평화와 안보를 위한 더 나은 환경에 기여한다.

7. 인권의 증진과 보호의 과정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과 목적에 부응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8.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를 보강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체제를 선택하는 자유롭게 표현되는 의지와 삶의 모든 측면에의 완전한 참여에 기초한다. 위의 배경에서,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수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는 보편적이어야 하며 다른 조건이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 공동체는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전세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증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9. 세계인권회의는 민주화와 경제 개혁의 과정 중에 있으며 아프리카에 많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의 이행을 성공시키도록 국제 공동체에 의해 지원되어야 함을 재차 단언한다.

10. 세계인권회의는 개발에 대한 권리 선언에 입증된 바와 같이,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기본적 인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재차 단언한다.

개발에 대한 권리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간은 개발의 중심적인 주제이다.

개발이 모든 인권의 향유를 촉진하는 반면, 개발의 부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들은 개발을 확실히 하고 개발에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데에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 공동체는 효과적인 개발의 권리 실현과 개발에의 방해물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개발의 권리 실현을 향한 과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정한 경제적 관계와 유망한 경제적 환경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11. 개발에의 권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개발적이고 환경적인 필요를 공정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유독, 유해한 물질과 폐기물의 불법적인 투기가 잠재적으로 모든 이의 생명과 건강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국가에게 유독, 유해한 물질과 폐기물 투기와 관련되어 현존하는 규정들을 채택하여 강력히 이행하고 불법 투기의 예방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이는 과학적 진보와 그것의 적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회의는 정보 과학에서는 물론,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 특정한 진보들이 잠재적으로 개인의 고결함, 존엄성, 그리고 인권에 불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지하며, 인권과 존엄성은 보편적인 관심사인 이 영역에서 완전히 존중되어야 함을 확실히 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구한다.

12. 세계인권회의는 자국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이룩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의 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이들의 외채 경감을 돕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국제 공동체에 요청한다.

13.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으로 국가적, 국제적 기구들은 인권의 완전하고 유효한 향유를 보증하기 위해 국가, 종교,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유망한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14. 광범위한 극빈의 존속은 인권의 완전하고 유효한 향유를 저지한다; 극빈의 즉각적인 해소와 영구적인 제거는 국제 공동체의 우선적인 과제이어야 한다.

15. 어떠한 종류도 차별하지 않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은 국제인권법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모든 종류의 인종주의와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와 관련 행위의 조속하고 포괄적인 제거는 국제 공동체의 우선 과제이다. 국가들은 이들을 예방하고 이에 맞서 싸울 효과적인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단체, 조직, 정부간 그리고 비정부 조직과 개인은 이러한 악에 대항한 행동에 협력하고 조직하는 데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6. 세계인권회의는 인종차별정책의 해소 과정에서 나타난 진전을 환영하며, 이 과정에 조력할 것을 국제 공동체와 국제연합 체제에 요구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또한 인종차별정책의 평화적인 해소의 추구를 잠식하기 위한 끊임없는 폭력 행위들을 개탄한다.

17. 몇몇 국가의 마약 밀매에의 연계는 물론, 테러의 모든 형태와 징후의 행위, 방법, 수행은 인권, 기본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행위들이며, 이는 영토 보전, 국가 안보를 해치고 합법적으로 제정된 정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다. 국제 공동체는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18.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양도불가능하고 완전하며 분할될 수 없는 보편적인 인권이다. 국가, 종교,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여성의 정치, 시민,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삶에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와 성에 기반한 모든 종류의 차별의 근절은 국제 공동체의 우선적인 목표이다.

문화적 편견과 국제적 불법 거래에서 유래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성에 기반한 폭력과 모든 종류의 성적 희롱과 착취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며 근절되어야만 한다.

여성의 인권은 모든 여성 관련 인권 협정의 장려를 포함한 국제연합 인권 활동의 한 완전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정부, 조직, 정부간 그리고 비정부 조직이 여성과 여아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9. 소수자의 권리의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과, 이들이 살아가는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에 그러한 권리 증진과 보호가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여,

세계인권회의는 국가적 혹은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의 인권 선언에 부응하는 법 앞에서 소수자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완전히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충분하고 유효하게 누리도록 보증할 국가의 의무를 재차 단언한다.

소수자들은 간섭이나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를 누리고, 자신의 종교를 말하고 준수하며,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20. 세계인권회의는 원주민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그들이 사회의 개발과 다원성에 한 고유한 기여를 인정하며 국제 공동체가 그들의 사회경제문화적 안녕과 지속적인 개발의 결과물의 향유에 힘쓸 것을 강력히 재차 단언한다. 국가는 모든 사회의 측면, 특히 그들에 해당되는 문제에 있어서 원주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원주민의 권리의 증진과 보호의 중요성과, 그들이 사는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그러한 증진과 보호가 미치는 기여를 고려하여, 국가는 평등과 비차별의 기반에서 원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협정된 명확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 문화와 사회 조직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21. 세계인권회의는 많은 국가들에 의한 아동 인권 회의 협정의 이른 비준을 환영하고,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에 의해 채택된 아동의 생존, 보호와 발전을 위한 세계 선언과 행동 계획 안의 아동의 인권의 인정을 주목하며, 1995년 협정을 보편적으로 비준할 것과, 모든 필수적인 법적, 행정적, 그리고 다른 방법의 채택을 통해 관련국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며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할당하기를 촉구한다. 아동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서, 비차별과 아동의 이권이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하며, 아동의 시각이 정당한 중요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 국내, 국제적인 절차와 강령들은 아동, 특히 기근과 가뭄과 다른 위급 상황 속의 아동뿐만 아니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의 질병을 앓는 아동, 난민 아동, 구류된 아동, 무력 전투 내의 아동들을 포함하는 여아, 유기된 아동, 거리의 아동, 그리고 아동 포르노그래피, 아동 성매매나 장기 매매와 같이 경제적, 성적으로 착취되는 아동의 옹호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또한 아동의 인격이 완전하고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 더 나은 보호를 가져다 줄 가족 환경 안에서 자라야 함을 강조한다.

22.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면에 활동적으로 참여할 것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비차별,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향유를 보장하는 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3.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이가 종류에 차별 받지 아니하고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 망명을 권리와 고국에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망명자의 지위와 관련한 1951년 협정, 1967년 의정서와 종교적 협정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영토에 많은 수의 난민들을 계속 수용하는 국가들과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의 임무에 대한 헌신에 존중을 표현한다. 또한 근동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국제연합 난민 구제 사업국(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무력 갈등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야비한 폭력들이 난민을 만드는 복합적이고 복잡한 요인들 사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세계적인 난민 위기의 복합성의 관점에서, 또 국제연합헌장, 관련된 국제적 협정들과 국제적인 연대에 따라, 또 고통 분담의 정신으로,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의 지령을 명심하여 관련 국가들과 조직들과의 협력과 조화 안에서 국제 공동체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는 난민과 다른 추방된 사람들의 동향의 근본 원인과 결과를 다룰 전략을 개발하고, 위급 상황에 대한 준비와 응답 절차를 강화하고, 유효한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며, 국제 난민 회의에 의해 채택된 해결책들을 포함하여 주로 안전하고 자발적인 송환을 통한 영속성 있는 해결책을 취하는 것 외에도 여성과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유념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국가들의, 특별히 난민들의 고국의 의무를 강조한다.

포괄적인 접근에 따라, 세계인권회의는 정부간의 인도주의적 조직들을 통한 특별한 관심과, 또한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한 귀환과 복귀를 포함한 난민들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의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연합헌장과 인도주의적인 법률의 원칙에 따라,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천재(天災)와 인재(人災)의 희생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원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24.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취약하다고 여겨져 온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 그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제거, 그리고 현존하는 인권 협정들의 강화와 더욱 효율적인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들은 특히 교육,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의 영역에서 취약한 부분의 사람들의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지하며,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25. 세계인권회의는 극빈과 사회적 배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며 개발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극빈과 그 원인의 더 나은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 또한 극빈과 사회적 배제를 끝내고 사회적 진보의 열매의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단언한다. 국가들은 극빈층이 그들이 사는 공동체의 문제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촉진해야 하며, 인권의 증진과 극빈에의 투쟁에 대한 노력을 활성화해야만 한다.

26. 세계인권회의는 인권 협정들의 체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진보를 환영하며 이는 역동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이고 인권 조약들의 보편적인 비준을 촉구한다.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인권 협정들에 동의하도록 또한, 가능한 한 이를 유보하지 않도록 장려된다.

27. 모든 국가는 인권에 대한 불만과 폭력을 시정할 구제책들의 유효한 체제를 제공해야 한다. 법 집행부와 검찰을 포함하는 사법 재판과 특히, 국제 인권 협정들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기준들에 따른 독립적인 사법권과 법 전문직은 완전하고 비차별적인 인권 실현에 필수적이며 민주주의와 지속적인 개발의 과정에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법 관련 기구들은 적절히 자금이 제공되어야 하며, 국제 공동체는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모두를 늘려야 한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권의 성취를 위한 우선적인 토대 위에서 자문 부문의 특별 강령들을 이용하는 것은 국제연합의 의무이다.

28. 세계인권회의는 특히 집단 학살, “인종 청소”와 전시의 체계적인 여성 강간의 형태로 나타나 거대한 난민 이동과 유민들을 만드는 거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그러한 끔찍한 행위들을 강력히 비난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처벌되어 그러한 행위들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한다.

29. 세계인권회의는 국제 인권 협정들과 국제 인도주의적인 법률에 내재된 기준의 경시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하고 효율적인 구제책이 부족함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시민을 침범하는,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들을 해치는 무력 갈등 중의 인권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 그러므로 세계인권회의는 국가들과 모든 무력 갈등에 연루된 측에게, 국제적인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권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물론, 1949년 제네바 협정과 국제법의 원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법률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세계인권회의는 희생자들이 1949년 제네바 협정과 다른 관련 국제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법령들에 밝혀진 바와 같이, 인도주의적인 조직들에 의해 원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재차 단언하며 그러한 원조에 대한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접근을 요구한다.

30. 세계인권회의는 또한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의 중대한 방해물이 되는 야비하고 조직적인 폭력과 상황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유감과 규탄을 표명한다. 그러한 폭력들과 방해물들은 고문과 냉혹하고 잔인하며 야비한 처우나 처벌, 정식 절차를 무시한 임의적인 사형 집행, 실종, 임의적인 구류, 모든 종류의 인종주의, 인종 차별과 인종 격리 정책, 타국 점령과 지배, 외국인 혐오, 빈곤, 기아와 다른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부인, 종교 배척, 테러리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법치의 부재를 포함한다.

31. 세계인권회의는 국가들에 대해 국가 간 무역 관계에 방해가 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 협정들의 형태로 명시된 인권—특히 식량과 의료, 주거와 필수적인 사회적 시설을 포함하는 건강과 복지를 충족하는 생활 수준에 대한 모든 이의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인권국제법과 국제연합헌장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일방적인 수단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32. 세계인권회의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보편성, 객관성과 비(非)선택성의 보장의 중요성을 재차 단언한다.

33. 세계인권회의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다른 국제 인권 협정들에 명기된 바와 같이, 국가들은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목표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재차

단언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에 협조할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들이 그리 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은 국가들, 그리고 모든 인종적, 종교적 집단들 간의 이해, 관용, 평화와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국제연합 활동의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과 정확한 정보의 유포는 인종, 성, 언어나 종교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모든 개인에 관한 인권의 증진과 존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국제적 수준에서 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교육 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자원의 제한과 기구의 부적절함이 이러한 목적의 즉각적인 실현을 방해함을 인지한다.

34. 각 개인이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훈련, 교육, 대중 참여와 시민 사회를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원조, 인권에 대한 자각을 지원하며 국가의 입법 행위, 법령, 그리고 관련 기반 시설들의 설립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에 배당된 자원을 정부, 국제연합과 다국적 기구들은 충분히 증가시킬 것을 촉구한다.

인권센터 산하의 자문 활동과 기술적인 협력 프로그램들은 강화되고 더욱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 인권 존중을 향상하는 데 주요하게 공헌해야 할 것이다. 국가들은 국제연합의 정규 예산으로부터 더 큰 할당량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자발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에 더욱 공헌할 것이 요청된다.

35. 국제연합의 인권을 증진, 보호하는 활동을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에 요구된 바와 같이, 국제연합 현장에서 인정된 인권의 중요성과 국제연합 인권 활동의 요구들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제연합 인권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6.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기구가 행하는, 특히 소관 관청에 대한 고문 능력, 인권 유린 구제에의 역할, 인권 침해의 정보와 인권 교육에 대한 그들의 중요하고도 건설적인 역할을 재차 단언한다.

세계인권회의는 국가 기구의 설립과 강화를 장려하며, “국가 기구의 지위와 관련한 원칙”에 존중을 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특별한 요구에 가장 알맞은 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각 국가의 권리임을 인정한다.

37. 지역적 합의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국제적인 인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듯이, 보편적인 인권 기준과 인권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이러한 합의를 강화하고 이의 효율성을 증가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노력을 시인하며, 동시에 국제연합 인권 활동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지역적인 합의가 아직 없는 곳에서 이를 설립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를 재청한다.

38. 세계인권회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의 증진과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비정부 기구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세계인권회의는 그들이 인권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 분야에서 교육, 훈련 및 연구를 수행하며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기여함을 높이 평가한다. 기준 설립의 주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세계인권회의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의 비정부 기구의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인권회의는 정부와 비정부 기구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권 영역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들과 그 회원들은 세계인권선언에 인정된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국내법의 보호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부 기구는 국내법과 세계인권선언의 틀 내에서, 간섭 받지 않고 그들의 인권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해야 한다.

39. 세계인권회의는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책임지는 공정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체 역할의 증대를 장려한다. 이를 위해 국내법의 틀 내에서 이들에 대한 자유와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II

A. 국제연합 체제 내에서 인권과 관련한 협력의 증대

1.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연합 체제 내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지원을 위해 협력을 증가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을 다루는 모든 국제연합 기관, 조직, 그리고 특수 국(局)들이 그들의 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또한 사무총장에게 관련 국제연합 조직과 특수 국(局)들의 고위 관료들이 연례 회의에서 활동의 협력 외에도 모든 인권의 향유에 관한 전략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를 권고한다.

2. 더욱이, 세계인권회의는 지역적 조직들과 유능한 국제적, 종교적 재정 및 발전

기구들에게 인권 향유에 대한 그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 또한 평가하기를 요구한다.

3. 세계인권회의는 관련 국제연합 특수 국(局)들과 조직과 기구들과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정부간 조직들이 인권 기준의 형성, 증진과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세계인권회의의 결과를 고려해야 함을 인정한다.

4. 세계인권회의는 보편적인 승인을 목적으로 국제연합 체제의 틀 내에서 채택된 국제 인권 협약과 의정의 인가와 승인 및 계승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에 협력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사무총장은 방해물을 식별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협약 기구들의 자문으로 이러한 인권 협약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대화를 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5. 세계인권회의는 국가들이 국제 인권 협정에 위임한 조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어떠한 조건이라도 가능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공식화하며, 관련 협약의 목적과 목표는 어떠한 것보다 양립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그 조건들을 철회하는 관점으로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를 장려한다.

6. 세계인권회의는 현존하는 국제적인 기준의 높은 질을 유지하고 인권 협정의 남발을 피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1986년 12월 4일의 총회 결의 41/120에 포함된 새로운 국제 협정의 완성과 관련한 지침을 재차 단언하며, 새로운 국제 기준의 완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인권 조직들이 이러한 지침을 유념하고, 새로운 기준을 기획할 필요성에 의거해 인권 협약 기구들과 상의하며, 사무국에 제안된 새로운 협정들에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청할 것을 요구한다.

7. 세계인권회의는 인권 영역에서 정보를 유포하고 훈련 및 다른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연합조직의 지역 사무실에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국의 요청에 응해 인권 관료들을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 관련 활동에 선임되는 국제적인 시민 봉사자들을 위한 인권 훈련은 조직화되어야 한다.

8. 세계인권회의는 긍정적인 동력으로서의 인권위원회의 긴급 회합의 소집을 환영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에 반응하는 다른 방법들이 국제연합 체제의 관련 조직들에 의해 고려되어야 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자원

9.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센터의 활동과 이를 수행할 인적, 재정적, 그리고 다른

가능한 자원들 간의 증가하는 불일치를 염려하고, 다른 중요한 국제연합 프로그램들에 필요한 자원들을 기억하여, 사무총장과 총회에 인권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을 국제연합의 현재와 미래 정기 예산으로부터 충분히 증가시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더 많은 추가 예산 자원을 강구할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0. 이러한 틀 내에서, 국제연합 인권 조직들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인권센터에 의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기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이 인권센터에 직접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인권센터의 기술적인 협력 활동의 자발적인 기금은 이러한 강화된 예산을 증강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현존하는 신탁 자금에의 많은 기부를 요청한다.

11.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센터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재정적 자원과 다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과 총회에 요청한다.

12. 세계인권회의는 정부간 조직들에 위임된 바와 같이, 인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자원을 확인할 필요를 인식하여, 사무총장과 회원국이 국제연합 헌장 101조에 부응하여 증대된 지령에 알맞은 자원이 사무국에 할당되도록 보장할 목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회의는 회원국에 위임된 인권의 시급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산 주기 내의 과정에 어떠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지를 사무총장이 고려하도록 청한다.

인권센터

13.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연합의 인권센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14. 인권센터는 인권에 대한 전체제에 걸친 관심을 통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센터의 주요 역할은 다른 국제연합 조직 및 기관들과 완전히 협력할 수 있을 때에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 인권센터의 통합적인 역할은 또한 뉴욕의 인권센터 사무실이 강화되어야 함을 내포한다.

15. 인권센터는 국가 기록계, 전문가, 활동 그룹들과 조약 단위들의 체제에 적절한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추가 권고 사항은 인권위원회에 의한 고려에서 우선사항이 되어야 한다.

16. 인권센터는 인권의 증진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리고 자문 업무들과 기술적 원조 프로그램들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존하는 자발적 기금은 이러한 목적으로 위해 충분히 확대되어야 하며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모든 활동들은 엄격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관리 규범을 따라야 하며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평가가 주기적으로 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평가 활동의 결과와 다른 관련 정보가 정기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센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러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회원국과 조직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정보 회의를 조직해야 한다.

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의 설립 문제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국제연합 기관들의 개정과 강화

17.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균형 있고 지속적인 발전의 틀 내에서 세계인권선언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대한 국제연합 인권 기관들의 지속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특히, 국제연합 인권 기관들은 이들의 조직성, 효율성과 효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18. 세계인권회의는 48기 의회의 보고를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인권고등판무관의 설립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을 총회에 권고한다.

B. 평등, 존엄성과 관용

1.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와 모든 종류의 배척

19. 세계인권회의는 인종주의와 인종 차별, 특히 인종격리 정책, 또는 인종 우월주의나 인종 배타주의의 교조나 인종주의의 현대적 형태 및 표명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제도적 형태의 근절을 국제 공동체의 주요 목표이자 인권 영역에서의 전세계적인 추진 프로그램으로 간주한다. 국제연합 조직들과 국(局)들은 같은 목적에 수반하는 지령들 뿐 아니라 인종주의와 인종 차별에 대항하는 30년과 관련한 이러한 조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인종주의와 인종 차별에 대항하는 조치를 위한 10개년 프로그램 신탁 기금에 관대한 기부를 할 것을 국제 공동체에 호소한다.

20.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정부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또는 관련 배척 행위의 모든 형태와 징후들을 방지하고 대항할 강력한 정책을 형사 법안을 포함한 적절한 입법 제정으로써, 또 이러한 현상에 대항할 국가 기구의 설립을 통해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21. 세계인권회의는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와 관련 배척 행위에 대한 특별 보고를 위임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모든 관련 국가들에게 협약의 14조항 하에 선언을 채택할 것을 고려하기를 호소한다.

22.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정부가 국제 의무에 부합하여, 그리고 각국의 법률 체제에 조응하여 여성 차별 관행, 종교 사적의 신성 모독을 포함한 종교나 신념에 기반을 둔 배척, 그리고 이에 관련한 폭력에 대응할 모든 적절한 방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개인이 사상, 양심,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또한 모든 국가가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일체의 비관용과 차별의 근절을 위한 선언의 규정을 수행할 것을 청한다.

23. 세계인권회의는 인종 청소와 관련된 범죄를 범하거나 위임한 모든 사람이 개별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인권 유린에 책임을 져야 하고, 국제 공동체는 이러한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이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24.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인종 청소의 관행을 시급히 근절하기 위해 이에 맞서기 위한 즉각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참혹한 인종 청소의 희생자들은 적절하고 효력 있는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국가적 혹은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

25. 세계인권회의는 국가적 혹은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의 인권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할 방법과 수단을 검토할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인권회의는 소수자와 관련하여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상황을 원조하기 위해 관련 정부의 요청에 대해, 자문 기관과 기술적 원조의 부분으로써, 분쟁의 예방과 해결 및 소수자 문제와 인권에 대해 검증된 전문가 집단을 제공할 것을 인권센터에 요구한다.

26. 세계인권회의는 국가적 혹은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의 인권 선언에 부응하여 국가적 또는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것을 국가들과 국제 공동체에 촉구한다.

27. 적절히 할 조치들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적 삶의 모든 측면과 국가 내의 경제적 진보와 개발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원주민

28. 세계인권회의는 11기 의회에서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의 기획을 완성할 것을 소수자 보호와 차별 예방을 위한 소위원회의 원주민 활동 그룹에 요구한다.

29. 세계인권회의는 원주민의 권리 선언의 기획 완성과 관련해 원주민 활동 그룹의 지령을 재개하고 개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인권위원회에 권고한다.

30. 세계인권회의는 또한 국제연합 내의 자문 업무들과 기술적인 원조 프로그램들이, 원주민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국가들의 원조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나아가, 인권센터가 이 문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활동을 강화하는 전반적인 틀 내에서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권고한다.

31. 세계인권회의는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특히 원주민 자신들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32. 세계인권회의는 총회가 활동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원주민들과 연합하여 결정할, 1994년 1월부터 시작되는 세계 원주민의 국제적인 10개년을 선언하기를 권고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해 적절한 자발적 신탁 기금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10개년의 구도 내에서, 국제연합 체제 내의 원주민을 위한 영구적인 포럼의 설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주 노동자

33.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보호를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34. 세계인권회의는 이주 노동자와 그들이 사는 국가의 나머지 사회 간의 조화와 관용이 더욱 강화되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35.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을 승인, 비준할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국가들에게 청하는 바이다.

3. 여성의 동등한 지위와 인권

36.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인권이 여성에 의해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되어야 하며 이것이 정부와 국제연합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또한 개발 과정에서 행위자와 수혜자 모두로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 의해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1992년 6월 3-14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 제21안건 24장에 진술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개발을 향한 여성의 세계적 행동에 세워진 목적들을 반복한다.

37. 여성의 동등한 지위와 여성의 인권은 국제연합의 전체제적인 활동의 주류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관련 국제연합 조직들과 절차들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 지위에 관한 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 차별 근절 위원회, 여성을 위한 국제연합 개발기금, 국제연합 개발 프로그램과 다른 국제연합 부서들 간의 협력을 증대하고 이들의 목적과 목표의 더 나은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권센터와 여성진흥부(部) 간의 협력과 통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38. 특히, 세계인권회의는 공적이고 사적인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모든 형태의 성희롱, 여성 착취와 매매의 근절, 법 집행에서의 성에 대한 편견의 근절, 여성의 권리와 특정 전통이나 관습적 관행, 문화적 편견과 종교적 극단주의의 유해한 효과 간에 발생하는 모든 갈등의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여성 폭력에 대한 선언의 초안을 채택하기를 총회에 요구하며 규정과 부응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할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무력 갈등 상황에서의 여성 인권의 유린은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적인 법률의 근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살인, 체계적 강간, 성 노예, 그리고 강요된 임신을 포함하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위반은 특별히 효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39. 세계인권회의는 음성적이거나 양성적인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의 형태의 근절을 촉구한다. 국제연합은 2000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대해 모든 국가들에 의한 보편적인 인준의 목적을 장려해야 한다. 협약에 대해 특히 다수의 제한들을 다루는 방법과 수단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여성 차별 근절 위원회는 협약에 대한 제한들의 검토를 지속해야 한다. 국가들은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반하거나 국제 협약법에 조응하지 않는 제한 사항들을 철회하도록 요구된다.

40. 협약 감시 기구들은 동등한 인권 향유와 비차별을 추구하여 여성들이 현존하는 이행 절차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유포해야 한다. 새로운

절차들은 또한 여성 평등의 언질과 여성 인권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되어야 한다. 여성 지위에 관한 위원회와 여성 차별 근절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준비를 통해 청원권 도입의 가능성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50기 의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의 위임을 고려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41. 세계인권회의는 여성이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향유할 중요성을 인정한다. 1968년 테헤란 선언, 세계여성회의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에 관한 협약의 배경에 따라, 세계인권회의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기초하여 여성이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의료 보호와 다양한 가족 계획 지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모든 수준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재차 단언한다.

42. 협약 감시 기구들은 심의와 조사에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인권을 포함하여 성별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협약 감시 기구들에 제출될 보고서에서 국가들은 법률상, 그리고 현실상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위원회가 49기 의회 결의에서 인권 영역 내의 보고자들과 활동 그룹들 또한 그리 하도록 장려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1993년 3월 8일의 1993/46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여성진흥국은 다른 국제연합 기구들, 특히 인권센터의 협력 하에 국제연합의 인권 활동이 성별 구별적인 학대를 포함한 여성의 인권 유린을 정기적으로 다루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연합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구제를 위한 직원들이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 남용을 인식하고 다루며 성 편견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련이 고무되어야 한다.

43. 세계인권회의는 여성이 의사 결정 지위와 의사 결정 과정에의 더 많은 참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를 정부와 종교적, 국제적 조직들에 촉구한다. 이는 국제연합헌장에 부응하여 국제연합 사무국 내에서 여성 직원을 임명하고 승진하기 위해 더 나은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며, 국제연합의 다른 원칙과 보조 기관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장려한다.

44. 세계인권회의는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를 환영하며 세계여성회의의 우선적 주제인 평등, 개발과 평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인권이 토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촉구한다.

4. 아동의 인권

45. 세계인권회의는 “아동의 일차적 요구”의 원칙을 반복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국내 및 국제적 노력, 특히 아동의 생존, 보호, 발전과 참여에 대한 권리 존중을 촉진하는 국제연합 아동기금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6. 1995년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보편적인 비준과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 의해 채택된 아동의 생존, 보호, 발전에 대한 세계 선언과 행동안(案)의 전세계적인 승인과 이들의 효력 있는 이행을 성취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협약의 목적과 목표나 국제 협약법에 반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대한 제한 사항들을 철회할 것을 국가들에 요구한다.

47.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국가가 세계정상회의의 행동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으로 최대한의 자원을 이용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국내의 행동안에 통합할 것을 국가들에 요구한다. 이러한 국내 행동안과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 및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영양 실조와 문맹률을 감소시키며 안전한 식수(食水)와 기본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에 특별히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국내의 행동안들은 자연 재해와 무력 갈등과 극빈 아동의 심각한 문제에서 기인하는 절박한 위급 상황에 언제든지 맞서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48.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적인 협력 하에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의 심각한 문제를 다룰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아동 착취와 학대는 적극적으로 타파되어야 하며 이는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여아 살해, 유해한 아동 노동, 아동과 장기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여러 형태의 성적 학대에 대응할 효력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49.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연합에 의한 모든 수단들과 여아의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보장하는 특수 국(局)들을 지원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여아를 차별하고 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현존하는 법과 규범을 폐지하고 관습과 관행을 제거할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50. 세계인권회의는 총회가 무력 갈등 하의 아동 보호를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 계획안을 강력히 지지한다. 전쟁 지대의 아동에 대한 원조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규범이 이행되어야 하며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전쟁에 의해 정신적 외상을 입은 아동의 후(後)보호 조치와 재활의 필요성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아동권리위원회가 군입대의 최소 연령을 올리는

문제를 연구하기를 요청한다.

51.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연합 체제의 모든 관련 기관 및 조직들과 권한에 부응하는 감시 기구가 인권 관련 문제들과 아동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52. 세계인권회의는 비정부 기구들이 모든 인권 협정들과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정의 유효한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53. 세계인권회의는 아동권리위원회가 특히 선례가 없는 비준의 범위와 이후 국가 보고서의 제출을 고려하여, 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조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권한을 충족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

5. 고문의 근절

54. 세계인권회의는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대우 및 처벌에 대항하는 국제협약(고문방지협약)의 많은 회원국들의 비준을 환영하며 모든 다른 회원국들이 조속히 비준할 것을 장려한다.

55. 세계인권회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가장 극악한 폭력 중 하나가, 희생자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삶과 활동을 지속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결과인 고문 행위임을 강조한다.

56. 세계인권회의는 인권법과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법령 하에서 고문으로부터의 자유가 내부적이거나 국제적인 혼란기 또는 무력 갈등 시기를 포함한 모든 환경 아래 보호되어야 함을 재차 단언한다.

57. 그러므로 세계인권회의는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협정들의 완전한 이행,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행 기구들의 강화를 통해 고문 관행을 즉각 종결하고 이러한 악을 영원히 근절할 것을 모든 국가에게 촉구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국가가 특별보고의 임무 수행에서 고문에 대한 문제에 관해 이에 완전히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58. 국제연합 총회에 의해 채택된 고문 방지와 죄수와 억류자의 보호를 위한 의료진, 특히 의사들의 역할과 관련한 의료 윤리 원칙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유효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9. 세계인권회의는 고문 희생자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재활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체계 내에서 더욱 심화된 구체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특히 고문 희생자를 위한 국제연합 자원기금의 추가적인 기부에 의해 우선시되어야 한다.

60. 국가들은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자들의 면책을 유도하는 입법을 폐지해야 하며, 그러한 위반을 기소하여 법치의 견고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61. 세계인권회의는 고문 근절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예방에 집중해야 하고 따라서 구금 장소들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의 예방적 체계를 수립할 목적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채택할 것이 요구됨을 재차 단언한다.

강제 실종

62. 세계인권회의는 총회가 강제 실종으로부터의 모든 이의 보호에 대한 선언을 채택함을 환영하며, 모든 국가가 강제 실종의 행위를 예방, 종결, 처벌하기 위해 유효한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들과 다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어떠한 환경 아래에서도 관할 영토에서 강제 실종이 일어났다고 생각될 이유가 있을 때마다 수사를 시행하고 탄원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기소해야 할 의무가 모든 국가에게 있음을 재차 단언한다.

6. 장애인의 인권

63.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보편적이며 따라서 전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함을 재차 단언한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나며 삶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 사회의 모든 측면에의 활동적인 참여에 있어 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차별이나 다른 부정적인 차별 대우도 그 또는 그녀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이다. 세계인권회의는 정부들이 필요한 곳에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접근과 다른 권리들을 보장하는 입법을 채택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64. 장애인은 모든 곳에 있어야 한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의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육체적, 재정적, 사회적 혹은 심리적인 모든 방해물들의 제거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한다.

65. 37기 의회에서 총회가 채택한 장애인 세계행동강령을 기억하며, 세계인권회의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1993년 회의에서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본법의 초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C. 협력, 발전과 인권의 강화

66. 세계인권회의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을 증진하는 국내, 국제적 행동에 우선권이 주어질 것을 권고한다.

67. 인권 관련 기구의 강화와 설립, 다원적 시민 사회의 강화와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보호를 조력할 수 있는 조치들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거와 인권적 측면과 선거의 대중적 정보에 대한 원조를 포함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수행을 위해 정부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원조는 특히 중요하다. 법치의 강화, 표현의 자유의 증진과 정의의 실현,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사람들의 현실적이고 유효한 참여에 대한 원조도 똑같이 중요하다.

68.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센터에 의한 강력한 자문 업무와 기술적인 원조 활동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권센터는 요청되는 국가에 대해 인권 협약 하의 보고 준비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행동안의 이행과 같이 특정 인권 문제에 대한 원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 존중을 목표로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기구의 강화, 인권의 법적 보호, 관료들의 훈련, 광범위한 교육과 대중적 정보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요소로서 모두 가능해야 한다.

69.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전반적인 준수와 법치의 유지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적절한 국내 구조를 국가들이 세우고 강화하는 임무를 도울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국제연합 내에서 설립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인권센터에 의해 조직될 이러한 프로그램은 관련 정부의 요청에 응해 형사적 징계 기구의 개정, 변호사, 판사와 인권 방위군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다른 법치의 올바른 작용과 관련한 활동의 범위 내의 국내 기획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행동안의 이행을 위한 원조를 국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70.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구, 구조, 작동 방식과 제안된 프로그램의 기금 마련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는 안을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71. 세계인권회의는 각국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향상시킬 단계를 설정하는 국내 행동안의 작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72. 세계인권회의는 발전에 대한 권리 선언에 제정된 발전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이행, 실현되어야 함을 재차 단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인권회의는 발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주제 활동 그룹의 인권위원회의 임명을 환영하며 국제연합 체제의 다른 조직과 기관들과의 상의와 협동으로 이 활동 그룹이 국제연합 총회의 조속한 고려로 발전에 대한 권리 선언의 이행 및 실현에의 방해물을 제거하도록, 속히 포괄적이고 유효한 조치들을 공식화하고 모든 국가들에 의한 발전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방법과 수단들을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73. 세계인권회의는 발전과/또는 인권 활동을 하는 비정부 기구와 다른 대중 기구들이 발전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논쟁, 활동과 실행에 있어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정부들과의 협력 하에 발전 협력의 모든 관련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권고한다.

74. 세계인권회의는 정부들, 관할 기관과 기구들에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작용하는 법적 체계를 설립하고 이 영역에 작용하는 국내 기구에 대해 필요한 자원 투자를 충분히 증강할 것을 호소한다. 발전 협력 영역의 활동가들은 발전, 민주주의와 인권 간의 상호 관계를 상호적으로 증강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협력은 대화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또한 법치와 민주적 기구 강화와 관련하여 정보 자원 은행과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설립을 요구한다.

75.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문화 권리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의 검토를 지속하기를 장려한다.

76. 세계인권회의는 더 많은 자원이 인권센터의 자문 업무와 기술적인 지원 프로그램 아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적 합의의 강화나 수립을 가능케 하기 위해 쓰여질 것을 권고한다. 국가들은 국제 인권 협정들에 포함되어 있는 보편적 인권 기준에 합치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적 합의를 강화하도록 입안된 지역 워크숍, 세미나, 정보 교환과 같은 이러한 목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장려된다.

77.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연합에 의한 모든 조치들과 관련 특수 지국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다른 관련 국제 협정들에 명시되어 있는 바 노동 조합의 유효한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모든 국가가 이 점에 있어서 국제 협정들에 포함된 그들의 의무 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D. 인권 교육

78. 세계인권회의는 인권교육, 훈련과 대중적 정보가 공동체 간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의 증진 및 달성과 상호 이해, 관용, 평화의 조성에 필수적이라고 간주한다.

79. 국가들은 문맹을 근절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완전한 인성 발달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을 강화하는 교육을 지휘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모든 국가와 기구가 인권, 인도주의적 법률, 민주주의와 법치를 모든 교육 기구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교과 과정의 주제로 포함하기를 요구한다.

80. 인권 교육은 국제적, 지역적 인권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권의 보편적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공동 이해와 인식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적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81. 1993년 3월 국제연합 교육사회문화기구의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국제 대회에 의해 채택된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세계행동강령과 다른 인권 협정들을 고려하여, 세계인권회의는 국가들이 여성의 인권을 특별히 참작하여 광범위한 인권 교육과 대중적 정보의 유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82. 정부들은 정부간 기구, 국내 기구와 비정부 조직들의 도움으로 인권과 상호 관용의 인식 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연합에 의해 수행되는 세계인권 대중정보 캠페인을 강화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부들은 인권 교육을 시작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 영역에서의 유효한 대중적 정보 유포를 수행해야 한다. 국제연합 체제의 자문 업무와 기술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인권 영역의 교육 및 훈련 활동과 국제 인권 협정 및 인도주의적 법률에 나타난 기준들과 관련한 특별 교육, 그리고 이것들의 군대, 법 집행 인사, 경찰과 의료 전문가와 같은 특별 집단에 대한 적용과 관련한 국가들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어야 한다.

E. 실행과 감시 체계

83. 세계인권회의는 정부들이 국제 인권 협정들에 나타난 기준들을 국내 입법에 통합하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체계, 기구 및 사회 조직들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84. 세계인권회의는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내 제도를 설립하거나 강화하려는 국가의 지원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국제연합 활동 및 프로그램의 강화를 권고한다.

85. 세계인권회의는 또한,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과 지역적 기구와 국제연합 간의 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내 기구들 간의 협력 강화를 장려한다.

86. 세계인권회의는 국내 기구들의 체계를 향상시킬 방안과 수단을 검토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내 기구의 대표자들이 인권센터의 후원으로 정기적인 회합을 소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87. 세계인권회의는 인권 협정 하에서 국가별 보고를 준비를 위한 필요 조건과 지침을 조직할 목적의 단계들을 지속시키고, 각국이 수행하는 조약 의무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의 제출이 이러한 절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인권 조약 체결 단위들과 단위 의장의 회합과 관련 국가들의 회합에 권고한다.

88. 세계인권회의는 국제 인권 협정 관련 국가들, 총회와 경제사회위원회가 임무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관, 기구 및 절차의 더 나은 통합을 통해 효율성과 유효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현존하는 인권 협약 기구들과 다양한 주제 기관들 및 절차들의 연구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89. 세계인권회의는 특히 조약 체결 단위 당사자들과 단위 의장의 회합에서 제안된 다양한 사항들을 참작하여, 감시 업무를 포함한 조약 체결 단위들의 활동이 나아지도록 계속해서 힘쓸 것을 권고한다. 아동인권위원회의 포괄적인 국내적 접근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

90. 세계인권회의는 인권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이 모든 가능한 의사 소통 과정을 받아들이기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91. 세계인권회의는 인권 유린 범죄자들의 면책 문제를 우려하며, 이 문제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자 하는 인권위원회 및 소수자 차별 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92.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위원회가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현존하는 인권 협정들의 수행이 더욱 용이하게 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국제법위원회가 국제 법정에서 그 역할을 지속할 것을 장려한다.

93. 세계인권회의는 1949년 8월의 제네바 협정과 협안들에 아직 동의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이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입법상의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한다.

94. 세계인권회의는 인권 선언 초안의 조속한 완성과 채택을 권고하며, 사회의 개인, 단체, 기관들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를 권고한다.

95. 세계인권회의는 특별한 절차, 보고자, 대표, 전문가와 인권위원회와 소수자 차별 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의 활동 그룹들이 전세계에 걸친 모든 국가에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인적, 재정적 자원을 자공함으로써 이들의 체계를 유지 및 강화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절차와 구조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조화시키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절차와 구조들에 완전히 협력할 것이 요구된다.

96.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연합이 모든 무력 갈등의 상황 내에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국제적 인도주의 법률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권고한다.

97.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연합의 평화 유지 역할을 고려한 특정한 협정들 내의 인권 구성 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여, 총회가 국제연합헌장에 부합하여 인권센터와 인권 기구들의 보고,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98.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의 실현의 진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체계와 같은 부가적인 접근이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F. 세계인권회의의 추구

99. 세계인권회의는 총회, 인권위원회와 인권 관련 다른 국제연합 체제 내의 기구들과 국(局)들이, 국제연합 인권 10개년을 공포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현재의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고 사항들을 지체 없이 완전히 이행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인권회의는 더 나아가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목적에의 진보를 매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100. 세계인권회의는 국제연합 총회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인권 관련 국제연합 기구들과 국(局)들이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이행에 있어서 이루어낸 진보를 총회에 보고하고 53기 의회에서 그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을 의뢰한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고유한, 그리고 국내의 인권 기관들,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이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보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총회에 발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체제 내에서 채택된 국제 인권 조약들과 협정들의 보편적인 비준의 목표를 향한 진보를 평가하는 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